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226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6. 9. 8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윤영일

유성엽 · 이춘석 · 최경환국

김종회 · 김동철 · 김삼화

정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. 그러나 「국적법 시행령」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의2 제1항).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그 밖에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1조의2(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)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[이하 “복수국적자”(複數國籍者)라 한다]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| <p>제11조의2(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그 밖에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|